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2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윤준병·신영대·박민규

문대림 • 정동영 • 박홍배

조계원 · 김한규 · 민병덕

박지원 · 김태년 · 김태선

허종식 · 송옥주 · 서영교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 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 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48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명) ①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 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 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 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 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 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u>2030</u>년-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 |
|-------------------------------|
|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
|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 |
| 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 |
| 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
|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 |
|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
| 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 |
| 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 |
| 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 |
| 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
|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 |
| 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 |
|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 |
| 의 50)를 각각 <u>2025년</u> 12월 31 |
| 일까지 경감한다. |
| ① 제1청세도 보고된고 「고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 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 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2030년</u> |
| |
| ③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 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 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 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 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 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 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 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 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 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생 략)

| <u>2030년</u>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2030년</u> |
| |
| ⑤ (현행과 같음) |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세4 | 47소(한국환경공단에 | 내 안 | 召 |
|------------------|--------------------------------|-----|--------------------------------|
| , | 면)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13 | | |
| - | <u>2030년</u>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u>2030년</u> | |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
| | 1.·2. (현행과 같음)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에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
| 제4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대한 - <u>203</u> |
| 제 ² : | 48조(국립공원관리사업 | | |

|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
|---------------------------|-------------------|
|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 감면) |
|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 |
|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 | |
|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 |
| 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 |
|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 | |
| 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 | |
|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 |
|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u> | <u>2030년</u> |
| <u>년</u>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 | |
| 감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